

등부 2017년 제 26923호

인 증 서

발 기 인 총 회 의 사 록

2017년 9월 15일 시간은 12 시 00 분 주식회사 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 창립사무소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다.



발기인 총 수	3 명	이의 인수주식총수	60,000 주
출석발기인수	3 명	이의 인수주식수	60,000 주

발기인 대표 박 영 희는 발기인 전원이 상법 363조의 소정 소집절차의 단축 또는 생략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발기인이 출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회의 진행상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한바 발기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발기인 대표를 의장으로 선임하였고 동인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정관 승인의 건

의장은 별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하고 그 여부를 물은 즉,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이사의 선임방법을 물은바, 발기인 전원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임키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사 내 이 사 정 성 진

기타비상무이사 박 영 희

기타비상무이사 정 현 섭

위 피선거자들은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의장은 감사의 선임방법을 물은바, 발기인 전원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임키로 합의되어 그에 따라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단,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

감사 김 종 수

위 피선거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제4호 의안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 조사보고의 건

의장은 상법 제298조 소정 사항을 발기인 아닌 이사와 감사로 하여금 조사보고케 하다. 잠시 후 발기인이 아닌 이사및 감사는 별지 보고서와 같이 보고한 즉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제5호 의안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

의장은 정관에 본점을 서울특별시 에 둔다고만 정해져 있으므로 설치장소를 결정하자는 취지를 말한바 전원일치로써 다음과 같이 본점 설치장소를 결정하다.

본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승인의 건

의장은 이사의 보수한도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결의에 임한바 이사의 보수는 1인당 월 1백만원 이내에서 하기로 승인하다.

제7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승인의 건

의장은 감사의 보수한도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결의에 임한바 감사의 보수는 1인당 월 1백만원 이내에서 하기로 승인하다.

제8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자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본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그 선출방법을 물은 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대표이사 정 성 진

위 선출된 대표이사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써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시간은 12 시 30 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발기인이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다.

2017년 9월 15일

주식회사 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의장 겸 발기인대표 박 영 희

발기인 정 현 섭

발기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 이창희

조사보고서

본인은 2017년 9월 15일 본 회사 주식회사 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로 선임된바 발기인이 아닌 이사및 감사는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함.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

1.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는 보통주식 60,000주로 2017년 9월 15일 까지 그 전부에 대한 인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각주에 대하여 2017년 9월 15일까지 그 발행가액의 납입이 있었음은 주식회사 국민은행 반포지점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3.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재산인수에 관한 사항,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나 발기인이 받을 보수 등 상법 제290조에 규정하는 사항은 없다.
4. 기타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함이 인정된다.

이상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함.

2017년 9월 15일

주식회사 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조사보고자 겸 사내이사

정 성 진

조사보고자 겸 감 사

김 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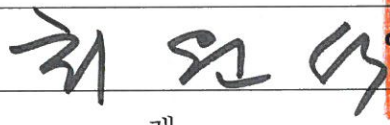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 전

[별지 제37호서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

(전화) 02-6743-7001

등부 2017 년	제 26923호
인 증	
위 주식회사 신세계하나제1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의	
2017년 09월 15일자 발기인총회 -----	
의사록에 대하여 의결권자 주주 박영희, 정현섭,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들의 각	
대리인 김연희 는 -----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	
그 기명날인 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	
을 확인 하였다. -----	
본 공증인은 위 촉탁인들의 각 대리인이 제시한 자동차운전면허증 ----- 에 의하여	
그 사람이 틀림없음을 인정하였다.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2017년 09월 15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비 전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소속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0	
공증담당변호사  인 	
아 래	
1. 공증촉탁서, 2. 진술서, 3. 확인서, 4. 주주명부, -----	
5.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정관-----	